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[별지 제39호의6서식] <신설 2018. 6. 14.>

한국관광 품질인증 신청서

접수번호		접수일시	

신청인	상호(법인명)		대표자
	주 소		
	사업자등록번호		연락처
	팩스번호		전자메일
	담당자	성명 / 직위	
		일반전화	
		휴대전화	
		전자메일	

인증신청 대상	시설·서비스명	최초등록일
	소재지(또는 주소)	
	인증신청 업종	면적(㎡)

「관광진흥법」 제48조의10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11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7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대표자): (서명 또는 인)

한국관광공사 사장 귀하

첨부서류	1.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의 사본 1부 2. 해당 사업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허가·등록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.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 전부 또는 일부와 인증 기준이 유사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이 유효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(해당 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) 4. 그 밖에 한국관광공사가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별 특성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위한 평가·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 제65조제7항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업무 규정으로 정하는 서류 각 1부

처 리 절 차

제출	⇨	접수	⇨	평가·심사 (서류평가 – 현장평가 – 심의)	⇨	평가·심사 결과통보
신청인		한국관광공사		한국관광공사		한국관광공사